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노 민 선*

목 차

- I. 서론
- II. 국내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변천과정
 -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3. 기술유출방지 설비투자 세액공제
 - 4.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III. 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 1.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
 - 2. 지식재산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Patent Box)
 - 3. 지식재산 기부시 조세지원
- IV. 지식재산 조세지원 관련 주요 이슈
 - 1.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 2. 기술이전 ·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 3.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조세지원
- V. 결론 및 제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책기획팀 선임과장.

초록

최근 들어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의 경우 지식재산 관련 비용 지출시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통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7개국은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혜택(Patent Box)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Patent Box 제도 도입을 공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지원혜택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재산 조세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또한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지식재산 조세지원 관련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R&D와 지식재산을 연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출원이나 등록을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가능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지식재산권의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서 개인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의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조세지원, 지식재산 조세, 연구개발 조세, 특허 조세, 지식재산 세제, 특허세제

I. 서론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지식재산의 양적규모는 세계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과 등록건수는 각각 178,924건과 94,720건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¹⁾ 삼국 특허 건수는 2005년 이후 줄곧 5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삼국특허²⁾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2년 이후 7.6%로 주요국 중 중국(24.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³⁾ IMD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수는 2위, 연구 10만명당 권리 유효 특허건수는 6위로 높게 나타났다.⁴⁾

그러나 지식재산의 질적 생산성은 아직까지 저조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활동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에 따른 수지의 적자규모는 265억달러('05)→32.7억달러('08)→58.9억달러('10)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⁵⁾ 공공연구기관의 R&D 생산성(기술이전수입/R&D지출)은 1.35%로 미국(6.82%)에 비해 매우 낮으며⁶⁾, 기술이전 건당생산성(기술료수입/기술이전건수)의 경우 3.19로 미국(55.62)과 유럽(8.95)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⁷⁾ WE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에 관한 순위는 40위로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⁸⁾

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식자산을 확보·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특허출원이나 유지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또는 특허 관련 비용을 지출했을 때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사후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은 양적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특허

1) 특허청, 2011 지식재산통계연보, 2012.

2) 삼국특허(Triadic patent Families)는 동일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된 특허 수를 의미한다. 삼국특허는 지리적 영향과 자국출원의 이점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와 관련된 국제비교시 용이하다.

3)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2012.

4) IMD,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2.

5)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12.

6) 지식경제부,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자료집, 2011.

7) 지식경제부,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2011.

8) World Economic Forum(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2012.

출원이나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은 오히려 기업으로 하여금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비효율적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식재산의 특허비용 지출시 정부지원을 전제로 한다면 해당 지식재산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특허출원과 유지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특허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특허경쟁력을 높여주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요 국가들의 경우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의 경우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통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⁹⁾ 중국과 함께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등 8개국이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혜택(Patent Box)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3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이다.¹⁰⁾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¹¹⁾ 지식재산 조세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또한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제로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의 경우 2012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지식재산 부문 최상위계획인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서도 세부 내용이 명시되고 있지 않다.¹²⁾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국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R&D와 지식재산을 연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 손원익·홍승현,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연구, 특허청·한국조세연구원, 2011.

10) Atkinson, R. D. & Andes S., *Patent Boxes : Innovation in Tax Policy and Tax Policy for Innovati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ITIF), 2011.

11) 손원익·홍승현, 위의 글.

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2012~2016), 2011.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국내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지식재산 조세지원 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국내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변천과정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 R&D의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에 포함되어 198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설정 등록한 내국인이 해당 권리를 국내에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에 양도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였다. 해당 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5년간 법인세 등을 면제하였다.

1989년부터는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대여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기한제한 없이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내국인이 특허권 등을 외국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와 내국인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외에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도록 했다.

1991년 12월부터는 특허권 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외국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하고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과학기술처 장관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 조세지원을 하도록 했다.

1998년 12월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어 1999년 1월

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의 실효성 평가를 위한 일몰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허권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인에 대해서 100% 면제하던 것을 국내, 해외를 구분하지 않고 200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2001년 1월부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술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관을 통해 기술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추가되었다. 2004년 1월부터는 내국인에 대한 기술비법 제공시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배제하였으며, 일몰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05년 12월까지 2년간 제도가 연장되었다. 그러나 연구비용을 감면해 주는 상황에서 기술이전소득까지 줄여준다는 것이 이중 지원이 아니냐는 재정경제부의 논리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2005년 말에 결국 제도가 폐지되었다.¹³⁾

〈표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 1982.1~1993.12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 1994.1~1998.12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 1999.1~2005.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도 시행		1982년~2005년
지원 대상		대·중소기업
제 도 변 천		〈제도 도입〉
	1982.1	· 특허권, 실용신안권 내국인에게 양도 : 법인세 등 면제 · 특허권 등을 대여 : 5년세 법인세 등 면제 · 특허권 등을 외국에 양도 또는 대여 : 당해소득의 50% 소득공제
	1989.1	·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 : 법인세 등 면제 추가 ·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 : 당해소득의 50% 소득공제 추가
	1991.12	· 특허권 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등 면제 규정 추가

제 도 변 천	1991.12	-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하고,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
	1999.1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조문 변경 및 일몰제도 도입(2013년 12월) · 특허권 등을 양도 또는 대여, 기술비법 제공 : 국내외 관계없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2001.1	· 기술이전 조세지원 대상에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술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관을 통해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추가
	2004.1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기술비법에 대한 조세지원 배제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 연장(2년)
	2005.12	· 일몰기한 도래로 인해 제도 폐지

2.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규정에 포함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2001년 제도의 도입 당시에 비해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율이 계속해서 축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입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조세지원이 가능했지만 중소기업 공제율은 2003년부터 10%에서 7%로 축소되었으며,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0년부터 제도가 폐지되었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지원실적은 두 제도를 합친 금액이다. 연평균 1,000억원 이상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다가 2005년 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되면서 지원실적인 10억원 내외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나마 2010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지원실적이 4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지식재산 관련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13) 정규언·박재환·오광욱, 연구개발 관련 조세제도 개선 연구, 한국세무학회, 2012.

〈표 2〉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도 시행		2001년~현재
지원 대상		중소기업
제 도 변 천		〈제도 도입〉
	2001.1	·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공제한도 : 당해 과세연도 법인세 등의 10%) · 일몰제도 도입(2013년 12월까지)
	2003.1	· 중소기업 공제율 축소(10%→7%)
	2004.1	· 2006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 연장(3년)
	2006.1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기술취득시 조세지원 배제
	2007.1	·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 연장(3년)
	2010.1	·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 중소기업에 한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 연장(3년)

과세특례와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제도가 축소되어 왔다.

〈표 3〉 기술이전·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실적¹⁴⁾

(단위 : 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실적	1,080	1,362	828	1,340	1,920	1,513	18	7	9	12	4

3. 기술유출방지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2002년에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중

14)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년도(2010년 이전에는 조세지출보고서)

소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2000년 10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12.9%가 최근 3년간 기업의 보안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의 유출비율이 13.6%로 대기업의 9.1%에 비해 높았다.¹⁵⁾ 특히 보안사항이 유출된 연구소의 보안시스템 활용도가 유출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해외의 경우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기술유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미국은 기술유출 관련 산업스파이 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2002년에 ‘방첩활동강화법’을 제정해 전 방첩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집중식 활동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러시아는 2004년 7월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의 조직을 개편하여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였다.¹⁶⁾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술유출방지지침과 지적재산의 취득·관리지침을 만들어 해외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¹⁷⁾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원 조사결과 2003년 기술유출 예상피해액은 14조원으로 최근 5년간 합계보다 많았으며,¹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결과 기술유출 비율은 14.5%로 3년 전 조사결과(12.9%)에 비해 유출기업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정부는 2004년 9월 18일에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산업보안 관련 설비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5년부터 기술유출방지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업에서 투자하는 ‘기술유출방지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

15) 이동주, 기업연구소 보안관리실태 및 애로조사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0.

16) 노민선,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6.

17) 日本 經濟産業省, 技術流出防止指針, 2003; 知的財産の取得・管理指針, 2003.

18) 산업자원부, 기술유출 방지대책, 2004.

19) 장영주·한기인,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2003.

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추가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동 제도 신설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와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모두 3%로 동일하며, 다른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 또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특법 25조의 기술유출방지설비에 대해서는 조특법 시행령에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 명시해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설비투자에 대해 공제율 등 지원조건이 거의 유사한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다만 개선된 점이라면 스마트카드시스템, 스피드게이트, 무인방범시스템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물리적 보안장비까지 기술유출방지설비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기술유출방지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액공제율 확대보다는 지원범위 조정이라는 수단을 보다 선호하였다. 2008년부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시스템설비의 범위를 정보화촉진기본법(2012년 10월 현재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이 2년 이상인 설비로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8년 12월 31일부터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지원범위에 ‘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를 추가하였다.

산업계에서는 기술유출방지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해서 세액공제율 확대를 건의하였다.²⁰⁾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 8월에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유출방지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²¹⁾

20) 허현희 외,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7; 노민선,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외, 6개 경제단체 R&D 조세 공동건의 자료, 2012.

21) 기획재정부, 2012년 세법개정(안), 2012.

〈표 4〉 기술유출방지 설비투자 세액공제 주요 내용

구 분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기술유출방지 설비
관련 조문		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		2002년~현재	2005년~현재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세액공제율		3%	3%
지원범위		정보보호시스템 ²²⁾	물리적 보안장비, ²³⁾ 정보보호시스템, ²⁴⁾ 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²⁵⁾
제 도 변 천	2002.1	제도 도입	-
	2004.1	2006년 12월 말까지 일몰연장	
	2005.1	-	제도 도입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2007.1	2009년 12월 말까지 일몰연장	
	2008.1	· 정보보호시스템의 법적근거 명시 (정보화촉진기본법) · 감가상각 2년이상 규정 신설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로 조문 변경
	2008.12	-	· 지원범위에 '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추가
	2009.8	· 정보보호시스템의 법적근거 변경 (국가정보화기본법)	-
	2010.1	2012년 12월 말까지 일몰연장	
	2012.8	· 2012년도 세법개정(안)에 일몰기한 연장(2015.12) 명시	· 2012년도 세법개정(안)에 세액공제율 확대(3% → 7%) 및 일몰기한 연장(2015.12) 명시

22) 정보보호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정보보호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6호).

23) 스마트카드 시스템, 스피드게이트, 무인방범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디지털 비디오레코더, 엑스레이 검색시스템, 금속탐지기 등.

24) 암호화 및 인증제품, 네트워크 보안제품, 시스템 보안제품 등.

4.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제도는 1979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1980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하였으며, 여기에서 우수발명은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으로 정의하였다. 1994년 3월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내용이 발명진흥법에 포함되면서 우수발명에 대해 규정하는 근거법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되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현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 중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⁶⁾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

Ⅲ. 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1.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

미국의 조세지원은 IRC(Internal Revenue Code)²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법과 유사하다. 미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은 1981년에 경제회복세금법(Economic Recovery Tax Act)을 통해 신설되었다. 미국은 연구개발 조세지원에 관한 내용을 IRC §41(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과

25) 카메라, 출입통제시스템, 경보시스템 등.

26)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27) 발명진흥법 제15조.

28) 미국의 법령체계인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Title 26이며, '26 CFR' 이라고도 명시한다.

§174(Research and Experimental Expenditures)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연구활동(Quailified Research)에 해당되어야 한다. 적격 연구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IRC §174에 규정된 실험적 연구개발활동이어야 하며, 여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비용에는 특허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해당한다.²⁹⁾ 특허획득 비용에는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데 지출하는 변호사에 대한 법률지원 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 모델, 생산 혹은 공정과정 등에 대한 비용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프랑스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은 1981년 CIR(Crédit d'impôt recherche, The Research Tax Credit)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은 프랑스가 가장 잘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연구개발비용의 범위에 특허 생산비용, 특허 유지비용, 특허 보호비용, 특허 관련 보험료 등 특허 관련 지출되는 비용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³⁰⁾ 일반적인 지식재산 조세지원에 특허 출원에 국한되는 데 반해 특허권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자문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과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서 지출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특허의 획득이나 소송 등 특허관련 보험계약에 대한 지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은 1997년에 신설되었으며, 2011년부터 SIFIDE II³¹⁾를 적용하고 있다. 적격 연구개발비용의 범위에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특허의 취득 비용과 특허의 등록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 되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³²⁾

29) IRC(26 CFR) §1.174-2.

30) article 244 quarter B of the French Tax Code.

31) Sistema de Incentivos Fiscais à I&D Empresarial(System of Incentives for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32) ERAWATCH 홈페이지 참조.

<http://erawatch.jrc.ec.europa.eu/erawatch/opencms/information/country_pages/pt/supportmeasures/support_mig_0018>

2. 지식재산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Patent Box)

Patent Box는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세율을 인하시켜 주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2005년에 폐지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유사하다. 2012년 10월 현재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7개국과 중국 등 8개국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73년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5년 이후 채택되었으며, 영국은 2013년부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이다. Patent Box는 기업들에게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R&D 세액공제와 다르다. 단순히 R&D를 수행하는 것 보다는 혁신성과의 사업화가 경제성장의 핵심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특허에 한해서만 인화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과 같은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9년에 Patent Box를 Innovation Box로 확대하였다. Innovation Box는 특허권 또는 R&D의 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 모두 세율인하 대상이 되며, R&D 성과를 특허로 신청하지 않거나 무형자산이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Patent Box의 효과에 대해서는 EU국가 중심의 분석결과가 일부 존재하며,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riffith 등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사례를 들어 Patent Box 도입이 특허출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³³⁾ EUROSTAT의 통계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간 R&D의 경우 Patent Box 도입국이 평균 증가율이 4.0%로 미도입국의 3.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로부터의 특허수입이나 중·고급제품 수출에 있어서도 제도 도입국이 미도입국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나타났다.³⁴⁾

33) Griffith, R., Miller, H. & O'Connel, M., *Corporate Taxes and Intellectual Property: Simulating the Effect of Patent Boxe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0.

<표 5> Patent Box 주요 내용³⁵⁾

구분 (시행년도)	법인 세율	실효 세율	적격 IP	구매 습득한 경우	지식재산 처분(거래) 소득
프랑스 (2005년)	34%	15%	특허 및 특허에 준하는 지식재산(SPC)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가능	가능
벨기에 (2008년)	34%	0~6.8%	특허 및 특허에 준하는 지식재산(SPC)	추가 개발한 경우에만 가능	불가능
네덜란드 (2007년)	25%	5%	특허 또는 적격이고 승인받은 연구개발	추가 개발한 경우에만 가능	가능
룩셈부르크 (2008년)	28.8%	0~5.76%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가능	가능
아일랜드 (1973년)	12.5%	0~1.25%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가능	가능
스페인 (2008년)	30%	15%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추가 개발한 경우에만 가능	불가능
스위스 (-)	8.5%	0~0.98%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가능	가능
중국 (2008년)	25%	0% (RMB5M ↓) 12.5% (RMB5M ↑)	등록된 특허와 Know How	가능	가능
영국 (2013년)	26%	10%	특허	미정	미정

34) Pro Inno Europe, *Innovation Union Scoreboard(IUS) 2010, 2011*.

35) 손원익 · 홍승현, 앞의 글; PriceWaterhouseCoopers, *A Comparison of Key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Tax Systems of Major OECD and Developing Countries*, 2010.

3. 지식재산 기부시 조세지원

지식재산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954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기업들은 1990년대 중, 후반까지 거의 활용하지 않다가 지식재산이 중요해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면서 특허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기부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³⁶⁾ 지식재산의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기부와 그에 따른 조세지원이라는 혜택은 기부된 지식재산의 가치가 부풀려 지고, 조세감면 규모의 증가를 초래하였다.³⁷⁾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부에 관한 법규정은 2004년 10월 일자리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³⁸⁾이 시행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지식재산 기부는 적격 지식재산에 해당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노하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의 기부를 통한 조세지원은 기부한 지식재산의 장부상 가치와 공정한 시장가치(FMV, Fair Market Value) 중에서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부금액은 해당연도 조정된 과세소득의 10%로 제한되며, 10%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³⁹⁾ 지식재산 기부자는 10년 동안 기부한 지식재산에 의하여 피기부자가 얻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비율이 감소하게 된다.⁴⁰⁾

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부를 통해 조세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IRS)에서 인정된 적격 조직(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해야 하며, 주로 대학과 기업 간의 기부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다. 지식재산 기부자는 기부할 경우 반드시 피기부자에게 적격 지식재산 기부(Qualified Intellectual Property Contribution)로 지정한다고 알려주어야 하며, 기부된 지식재산에 대한 자세한

36) Martin, D., *Patent Donations*, U.S. Internal Revenue Service, 2003.

37) Macbean, D., "Better to Give than to Receive : Evaluation Recent IP Donation Tax Policy Changes", *Duke Law & Technological Review*, 19(2005). pp.1-13.

38) H.R. 4520, 108th Cong. §882.

39) IRC(26 CFR) §170(b).

40) IRC(26 CFR) §170(m).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⁴¹⁾ 지식재산을 기부 받은 비영리단체나 대학은 기부 받은 이후 해당 지식재산으로 인해 창출된 연간 매출액을 기부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가 정확함을 인정받게 되면, 해당 매출액은 기부날짜에 따라 기부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IV. 지식재산 조세지원 관련 주요 이슈

1.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내와 해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비용뿐만 아니라 1982년부터 국제출원비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해 지역별 지원확대와 해외 출원비용 지원의 전국적 확산을 꾀하고 있다.⁴²⁾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연구활동비)에 특허정보조사비를 반영할 수 있다.⁴³⁾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는 모두 세계 4위 수준이며, 삼극특허 건수는 세계 5위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표를 제외한 지식재산권의 출원비용, 심사청구비용, 최초 3년간 등록비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70%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게 되면 4년째부터 연차등록료의 할증이 이루어지며, 3년을 주기로 할증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허유지의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당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식재산권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권리소멸 건수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8년에 70,728건이었던 권리소멸 건수는 2011

41) 기부자의 이름, 주소, 납세자 인증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 기부된 지식재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 기부일시, 적격 지식재산 기부로 지정한다는 성명 등.

42)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백서, 2012.

4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년에 91,53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⁴⁴⁾

이런 이유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기업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출원이나 유지에 대해서 사전에 의사결정을 하고 소요 비용을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조세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2. 기술이전 ·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기업의 입장에서 외부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외부로부터 기술을 취득하는 것은 지식의 확산(Spillover)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식의 확산 측면에서 볼 때 기술을 취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지식이 기업내부에 유입(Incoming Spillover)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술을 이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의 지식이 외부로 유출(Outgoing Spillover)된다는 점에서 지식정보 유출에 따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⁴⁵⁾ 따라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에 소극적이기 마련이며, 설사 이전을 하더라도 후속 R&D 등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 실제로 산학협력 기업의 4.7%만이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⁴⁶⁾ 중소기업의 89.4%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⁴⁷⁾

유럽을 중심으로 특허 등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무형자산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Patent Box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제도의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영국에서는 2013년부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에서는

44) 권동준, 「'자식같은 특허' 버리는 中企 뒤돌아 옵니다」, 전자신문, 2012. 10. 10자.

45) Jo, Y. & Lee, C., *Agglomeration Economics,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Firm Location Decision in Annual Conference*,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2008.

46) 노민선 · 주범식, 기업연구소 R&D협력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1.

4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학연 R&D협력정책 수요조사보고서, 2012.

경쟁우위 회복을 위해 유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Patent Box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⁴⁸⁾ 우리나라의 경우 Patent Box 제도와 유사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 1981년 말에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5년 말에 제도가 폐지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기술을 취득하는 것은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업의 흡수역량은 기업이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그 정보를 체화시켜서 실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흡수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급격하게 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기업 장기적 경쟁의 원천이 될 수 있다.⁴⁹⁾ 기업의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기술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기술을 취득하는데 애로를 크게 느끼고 있다.⁵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절반이 넘는 50.8%가 기술도입에 대한 의향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업의 84.6%가 최근 3년간 기술취득 등의 기술거래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기술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술거래 자금의 부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으며, 2012년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2003년부터 10%에서 7%로 축소된 채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공제는 2010년부터 폐지되었다.

3.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조세지원

Harhoff와 Hoisl가 독일 발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독일 종업원 발명법이 발명자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⁵¹⁾

48) Atkinson, R. D. & Andes S., 앞의 글.

49) Cohen, W. M. & Levinthan, D. A.,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5 No.1(1990), pp.128-152; Lane, P. J., Koka, B. R. & Pathak, S., "The Reification of Absorptive Capacity: A Critical Review and Rejuvenation of the Construc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1 No.4(2006), pp.833-863.

5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내기업 R&D 협력 실태조사, 2009.

51) Harhoff, D. & Hoisl, K., "Institutionalized Incentives for Ingenuity: Patent Value and the German Employees' Inventions Act", *Research Policy*, Vol.36 No.8(2007), pp.1143-1162.

Owan과 Nagaoka는 일본 발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발명자의 동기부여가 발명생산성에 대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⁵²⁾ 노민선과 이희수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원 1인당 직무발명 보상수준이 특허출원 실적 증가와 연구원 이직률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³⁾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법에 명확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과세관청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에 가능한 경우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등록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⁵⁴⁾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있거나 출원심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과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타 기업체에 이전하고 실시권을 설정한 후 해당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해당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⁵⁵⁾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고 연구기관의 정관 내지 운영규정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⁶⁾ 실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에서는 등록보상(국내 24.9%, 해외 16.3%)뿐만 아니라 발명제안보상(15.3%), 출원보상(국내 22.3%, 해외 13.7%), 실시보상(자사 10.7%, 타사 4.7%), 처분보상(5.5%)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⁵⁷⁾

V. 결론 및 제언

최근 들어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관련

52) Owan, H. & Nagaoka, S.,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Inventors*, RIETI, 2008, pp.1-40.

53) 노민선 · 이희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33호(2010), 47-80면.

54)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 재소득-46073-181, 2002. 12. 30.; 서일-123, 2005. 1. 27.; 서면1팀-4, 2008. 1. 2.; 서면1팀-536, 2008. 4. 17.

55) 소득-11, 2012. 1. 5.

56) 발명진흥법 제14조 제2항.

5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2011.

조세지원제도는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1982년부터 시행되어 아일랜드 다음으로 일찍 도입되었지만, 지식재산 관련 제도들이 2003년 이후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로 보조금이나 관련 정보의 연계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지식자산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출원이나 등록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를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⁵⁸⁾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의 권리 확보 및 분쟁대응에서 중요한 특허정보조사비 등이 조세지원 혜택에서 빠져 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특허출원 특허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⁵⁹⁾

둘째,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 경험이 있는 대기업의 4.6%만이 대학의 기술을 자사로 이전받은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⁰⁾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결손 등의 이유로 공제받지 못할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조세지원에 비해 실제 효과가 크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시켜 조세지원을 확대한다면 대기업의 경우 0%→3~6%로, 중소기업의 경우 7%→25%로 공제율이 커지게 된다.⁶¹⁾

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60) 노민선·주범식, 기업연구 R&D협력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1.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셋째,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가능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지식재산권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개인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의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득세법과 발명진흥법에는 직무발명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비과세 기타소득에 직무발명의 결과 발생하는 기술의 이전 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보상은 일반적인 직무발명보상과 지급시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뿐 발명자에게 발명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료율을 고려함으로써 직무발명보상과 기술이전보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⁶²⁾

마지막으로 기업이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지식재산권을 기부하는 경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 활용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유지비용을 계속 부담하더라도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휴면특허를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와 기술신탁제도의 성과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부 제한점을 가지며, 이에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시장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가치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 관련 기존 조세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

62) 大判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다. 제도가 효과적이라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노력이 가능할 것이며, 제도운영에 따른 성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식재산과 관련된 새로운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거나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세수감면 규모와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있도록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세수감면 규모에 비해 실제 지원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실증할 수 있다면 제도의 도입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학연 R&D협력정책 수요조사보고서, 2012.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2012~2016), 2011.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년도(2010년 이전에는 조세지출보고서).
_____, 2012년 세법개정(안), 2012.
- 노민선,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6.
- _____,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
- 노민선 · 이희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33호(2010).
- 노민선 · 주범식, 기업연구소 R&D협력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1.
- 산업자원부, 기술유출 방지대책, 2004.
- 손원의 · 홍승현,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연구, 특허청 ·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이동주, 기업연구소 보안관리실태 및 애로조사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0.
- 장영주 · 한기인,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2003.
- 정규언 · 박재완 · 오광욱, 연구개발 관련 조세제도 개선 연구, 한국세무학회, 2012.
- 지식경제부,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자료집, 2011.
_____, 제4차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계획, 2011.
- 특허청, 2011 지식재산통계연보, 2012.
- _____, 2011년도 지식재산백서, 201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내기업 R&D 협력 실태조사, 200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외, 6개 경제단체 R&D 조세 공동건의 자료, 2012.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12.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2011.
- 허현희 · 정해혁 · 이동주 · 노민선 · 김세성 · 이혜정 · 박미진,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7.
- 권동준, 「'자식같은 특허' 버리는 중소기업 돌아옵니다」, 전자신문, 2012. 10. 10자.

日本 經濟産業省, 技術流出防止指針, 2003.

日本 經濟産業省, 知的財産の取得・管理指針, 2003.

Atkinson, R. D. & Andes, S., *Patent Boxes : Innovation in Tax Policy and Tax Policy for Innovati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ITIF), 2011.

Cohen, W. M. & Levinthal, D. A., "Absorptive Capacity :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5 No.1(1990).

Griffith, R., Miller, H. & O'Connel, M., *Corporate Taxes and Intellectual Property : Simulating the Effect of Patent Boxe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0.

Harhoff, D. & Hoisl, K., "Institutionalized Incentives for Ingenuity : Patent Value and the German Employees' Inventions Act", *Research Policy*, Vol.36 No.8(2007).

IMD,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2.

Jo, Y. & Lee, C., *Agglomeration Economics,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Firm Location Decision in Annual Conference*,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2008.

Lane, P. J., Koka, B. R. & Pathak, S., "The Reification of Absorptive Capacity : A Critical Review and Rejuvenation of the Construc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1 No.4(2006).

Martin, D., *Patent Donations*, U.S. Internal Revenue Serve, 2003.

Macbean, D., "Better to Give than to Receive : Evaluation Recent IP Donation Tax Policy Changes", *Duke Law & Technological Review*, 19(2005).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2012.

Owan, H. & Nagaoka, S.,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Inventors*, RIETI, 2008.

PriceWaterhouseCoopers, *A Comparison of Key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Tax Systems of Major OECD and Developing Countries*, 2010.

Pro Inno Europe, *Innovation Union Scoreboard(IUS) 2010*, 2011.

World Economic Forum(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Tax Incentive Policy

Mean-Sun Noh

Abstract

Recently, more leading nations ar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tax incentive policies. Korea's R&D tax policies are assessed to be globally competitive, however the tax incentives on intellectual property are lacking and the benefits are continuously contracting. Also systematic analysi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tax policies is insufficient in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ax policies around the world and in Korea by analyzing main issues and problem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measures on intellectual property tax policy through systematic analysis and evidences. This study also aims to contribute in building a foundation on which corporates' activities to link R&D with intellectual property can successfully settl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upport spending on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R&D tax credit programs, increase tax credit support on technology acquisition fees, and expand the applicability of non-taxable income tax to the compensation on invention related to the duties.

Keywords

tax support,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box, IP tax, R&D tax